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5급 2명, 6급 10명, 7급 8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6.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심판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심판 3과를 신설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소속기관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9급 2명)을 행정직군 정원(9급 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항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 받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6.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8조제8항제19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 받는 배달종사자의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20.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 대한 명령·평가·이행지도 및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사고의 재해조사, 감독 및 조치

10.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단, 경기지청·성남지청·안양지청·안산지청·평택지청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내 대형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 관련 신고의 처리 및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감독 등 광역사업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각각에 대한 지정·등록, 지도·점검 및 이와 관련된 지정·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명령 및 과징금 부과·징수 업무

제15조제6항 중 “제8호까지 및 제10호”를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0호의 사항은 경기지청에 한한다.

제20조제1항 중 “심판 1과 및 심판 2과”를 “심판 1과·심판 2과 및 심판 3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심판 2과장 및 심판 3과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9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 정원을 노동위원회에 둔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제12조제1항 관련)

1. 지방고용노동청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서초구 및 동대문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 및 옹진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사하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 및 연제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수성구·북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청도군 및 군위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제주특별자치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 및 금산군

2. 지청 및 출장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서울강남지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동부지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 및 강동구
서울서부지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 및 은평구
서울남부지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 및 양천구
서울북부지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도봉구·강북구·종량구 및 노원구
서울관악지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금천구 및 동작구
인천북부지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서구 및 강화군
부천지청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의정부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고양지청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경기지청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용인시 및 화성시

성남지청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 하남시 · 이천시 · 광주시 · 여주시 및 양평군
안양지청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광명시 · 안양시 · 과천시 · 의왕시 및 군포시
안산지청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및 시흥시
평택지청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 오산시 및 안성시
강원지청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 홍천군 · 인제군 · 화천군 · 양구군 및 경기도 가평군
강릉지청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 속초시 · 동해시 · 양양군 및 고성군
원주지청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및 횡성군
태백지청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
영월출장소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영월군 · 정선군 및 평창군
부산동부지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 해운대구 · 금정구 · 수영구 및 기장군
부산북부지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북구 · 사상구 및 강서구
창원지청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군 · 함안군 및 의령군
울산지청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지청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김해시 · 밀양시 및 양산시
진주지청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 사천시 · 합천군 · 거창군 · 산청군 · 하동군 · 함양군 및 남해군
통영지청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 거제시 및 고성군
대구서부지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 · 달서구 · 남구 · 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고령군 및 성주군
포항지청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 경주시 · 영덕군 · 울릉군 및 울진군
구미지청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 김천시 및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영주지청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 상주시 · 문경시 및 봉화군

안동지청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 · 예천군 · 의성군 · 영양군 및 청송군
전주지청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 남원시 · 정읍시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완주군 · 진안군 및 무주군
익산지청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및 김제시
군산지청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 부안군 및 고창군
목포지청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시 · 무안군 · 영암군 · 강진군 · 완도군 · 해남군 · 장흥군 · 진도군 및 신안군
여수지청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 순천시 · 광양시 · 고흥군 및 보성군
청주지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 진천군 · 괴산군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및 증평군
천안지청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 아산시 · 당진시 및 예산군
충주지청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 제천시 · 음성군 및 단양군
보령지청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 · 서천군 · 청양군 · 홍성군 및 부여군
서산출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및 태안군

비고

1. 제14조제12항제9호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각 지청의 서울특별시
시에 위치한 관할구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할한다.
2. 제15조제6항 단서와 관련하여 경기지청은 경기지청 · 성남지청 · 안양지청 ·
안산지청 · 평택지청의 관할구역을 관할한다.

[별표 20]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8조 관련)

1. 제28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까지)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2. 제28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까지)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3. 제28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6월 29일까지)

총계	20
일반직 계	20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10
행정주사보	8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산재예방보상정책국) ① ~ ④ (생략) ⑤ 산재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략) <u><신설></u> 21. (생략) ⑥ (생략) ⑦ 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8조(산재예방보상정책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20. (현행과 같음) 21.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에 관한 사항 22. (현행 제21호와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 받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6.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14. (생략)

⑧ 산업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략)

<신설>

<신설>

19. (생략)

⑨ (생략)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 ⑪ (생략)

⑫ 산재예방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대형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관할 지청 및 출장소의 사고 처리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18. (현행 제14호와 같음)

⑧ -----
-----.

1. ~ 18. (현행과 같음)

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 받는 배달 종사자의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20.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21. (현행 제19호와 같음)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
-----.

1. ~ 8. (현행과 같음)

9.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 대한 명령·평가·이행지도

10. 소속 지청 및 출장소 관내
대형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

11.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
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
법」 위반신고의 처리 및 사
고사망 감소를 위한 광역사업
에 관한 사항

및 위험물질 누출·화재·폭
발 사고의 재해조사, 감독 및
조치

10.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단, 경기도
청·성남지청·안양지청·안산지
청·평택지청의 관할구역은 제
외한다) 내 대형 중대재해 발
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
관련 신고의 처리 및 산재 사
망사고 감소를 위한 감독 등
광역사업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보
건관리전문기관(업종별·유해
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
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각각
에 대한 지정·등록, 지도·점
검 및 이와 관련된 지정·등

12. (생략)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 ⑤ (생략) ⑥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제14조 제1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u><단서 신설></u>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교섭대표 결정과·심판 1과 및 심판 2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④ (생략) ⑤ 심판과장(<u>서울·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u>의 경우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을 말한다)은 제18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제18조제6항 각 호, 제18조제7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경우 제1호부	<u>록의 취소, 업무정지 명령 및 과징금 부과·징수 업무</u> 12.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2호-----. <u>단, 제10호의 사항은 경기지청에 한한다.</u>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① ----- ----- ----- 심판 1과·심판 2과 및 심판 3과-----.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u>의 경우 심판 1과장·심판 2과장 및 심판 3과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 ----- -----
---	---

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 7. (생략) 제28조(한시정원) ①·② (생략) <u><신설></u>	----- ----- --. 1. ~ 7. (현행과 같음) 제28조(한시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9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노동위원회에 둔다.</u>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2]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본문 관련)

구분	계	중앙노동	지방노동
		위원회	위원회
총계	361	89	272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360	88	272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9	28	2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33	25	108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84	11	73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0	3	1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행정서기보	2		2
기록연구사	1	1	
운전서기보	13	2	11
사무운영서기보	14	2	12
방호서기보	2		2

[별표 13]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구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365	93	272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364	92	272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9	28	2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 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34	27	10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83	11	7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4	4	20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행정서기보	4	1	3
기록연구사	1	1	
운전서기보	13	2	11
사무운영서기보	12	2	10
방호서기보	2		2